

## “불공정하도급 방지 위해 계약내용 온라인 공개를”

박승국 건정연 연구위원 “법으로 명문화하자” 건의

2014년 02월 17일 (월)

이시봉 ✉ [sblee27@kosca.or.kr](mailto:sblee27@kosca.or.kr)

투명한 하도급공사 관리를 위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같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방안’보고서를 통해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를 위한 법령을 개정,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에 관해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달 10일 이내에 △공사명 및 공사기간 △공사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사유) △하수급인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사 완료시까지 공개하도록 제안했다.

또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를 신설해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에 관해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제3자의 공익적 감시 활동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차단·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봉 기자